

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2일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 개요

사업목적 :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 촉진

지원대상 : 소상공인

* 단, '붙임2.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업종'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

지원규모 : 총 14,290개사

지원내용

*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세부사업명		지원내용
통합 신청 (메뉴판)	① 상품 개선	- (포장) 박스·스티커·설명서 등 포장 관련 디자인 제작 - (브랜드) 로고·캐릭터·배너 디자인 등 제작
	② 상세페이지 제작	- 소상공인 제품의 특징점을 반영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	③ 콘텐츠 제작	-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
	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- (온라인쇼핑몰) 단독딜 및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- (로컬상품관) 지역몰 내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
	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-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	⑥ SNS 마케팅	- 소상공인 상품 컨설팅, SNS 광고 및 결과 레포트 제공
	⑦ 온라인 홍보	- 검색 포탈을 활용한 검색 광고 등 상품 홍보 지원
	⑧ 물류 서비스	- 상품 보관, 포장, 배송 등 관련 물류 서비스 제공
개별 신청	⑨ 유통플랫폼 MD상담회	- 소상공인과 유통사 MD 간 1:1 상담·만남의 장 마련, 안정적인 판로 및 대형유통사 납품 기회 확대 지원
	⑩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	- 홈쇼핑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지원 및 방송 송출, QA 심의 등 상담회(컨설팅) 지원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- 지원 대상·상품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

<지원 제외대상>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붙임2] 참조
휴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소상공인)의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소상공인)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지원제외 상품	○ 해외 수입상품,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3

신청 및 접수

- 신청 기간

세부사업명		신청기간
통합 신청 (메뉴판)	① 상품 개선	'26.3.12 ~ 4.1
	② 상세페이지 제작	
	③ 콘텐츠 제작	
	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
	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
	⑥ SNS 마케팅	
	⑦ 온라인 홍보	
	⑧ 물류 서비스	
⑨ 유통플랫폼 MD상담회	(1차) '26.3.12 ~ 5.31 (2차) '26.6.1 ~ 9.30	
⑩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	'26.4.20 ~ (수시)	

□ 신청 방법

- (사업신청) 판판대로(www.fanfandaero.kr)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
-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,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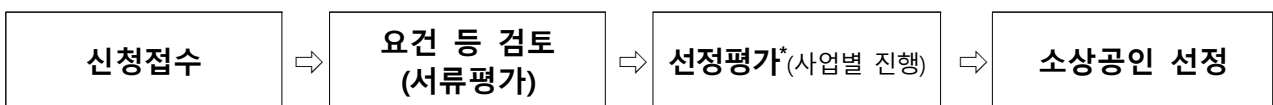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	비 고
① 사업자등록 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 소상공인 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 국세 납부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 지방세 납부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민원24
⑤ 상품기술서	·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	홈쇼핑 지원 시에만 제출
⑥ 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해당 시 제출

*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(업로드)하며, 온라인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) 제출 불필요

** 단,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
(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)

**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3.12일이면 유효기간이 3.12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□ 선정 절차



*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**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***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
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 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 -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 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 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

선정평가 기준 : <붙임1>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우대사항

-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해당 시 +5점
②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③ '25년 우수 특구(탁월·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④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
⑤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4

지원한도 및 자부담금

□ (①~⑧번) 메뉴판 지원 사업

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	자부담 비율	지원한도
① 상품 개선	2,385,000원	10%	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(1개사 당)
② 상세페이지 제작	1,602,000원		
③ 콘텐츠 제작	2,349,000원		
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800,000원	없음	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3,501,000원	10%	
⑥ SNS 마케팅	2,475,000원		
⑦ 온라인 홍보	2,475,000원		
⑧ 물류 서비스	1,980,000원		

* 정부지원금(90%) 외에 자부담금(10%)와 부가가치세(10%)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사업별 자부담금은 <붙임1>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메뉴판 지원(통합신청)이란?

- ⇒ '26년에는 위의 ①~⑧번의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기준 6백만원 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⇒ 메뉴판 지원을 받더라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(⑨플랫폼 MD상담회, ⑩TV·데이터 홈쇼핑)과 중복참여(지원)가 가능합니다.

□ (⑨번) 유통플랫폼 MD상담회 :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없음

□ (⑩번)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

(단위: 개사, 원)

구분	지원 기업수	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		
			정부보조금(80%)	자부담금(20%)		
방송 지원	TV	120	17,000,000	13,600,000	3,400,000	1,700,000
	데이터	160	13,625,000	10,900,000	2,725,000	1,362,5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5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메뉴판 지원 사업 운영방법

○ (사업신청) '메뉴판 사업'의 8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신청 및 우선순위 설정 가능(1~4순위)

○ (사업선정) 지원한도*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

* (지원한도)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(국비)를 합산하여 최대 **6백만원**을 초과할 수 없고, 개별사업의 최소 단가보다 잔여예산이 적게 남았을 시 추가 신청 관련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,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

○ (지원제한) ①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* 시,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, ② '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' 참여 시, 조건부** 중복지원 불가

* 예시) '26, '27, '28년 연속참여 시, '29년부터 지원 불가('26년부터 적용)

** 26년 '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(TOPS 프로그램)'을 통해 동일 수행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, TOPS 프로그램 2단계 선정 시 선정일 기준으로 '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수혜 중단(지원완료)

□ 유의사항

<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>

※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,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,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*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(수행기관-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)

**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라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지출분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(소득세)를 감면받을 수 있음

※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, 2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-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,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 - * 제출 방식 :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이커머스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,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.

□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<붙임1> 세부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
① 상품개선

세부사업명 : 상품개선

사업목적 :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

지원규모 : 총 1,080개사

지원대상 :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(B2C) 상품

유형	유형별 지원대상
패키지	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대상
브랜드	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 대상

* 과거에 상품개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
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6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보조금(90%)		부가가치세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
2,650,000	2,385,000	265,000	265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지원내용

- (진단 및 컨설팅)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,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, 개선 방향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(대면 또는 비대면)
- (디자인 개선) 신청한 유형(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, 유형 중 택1) 및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, 종류별 각 이미지 시안 2개를 제작하고 소상공인에게 전달 → 최종 선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

유형	디자인 범위(총 5종)	비고
패키지	아웃박스, 스티커(라벨), 테이프, 락지,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 등	유형 택1
브랜드	브랜드(로고), 캐릭터,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, 배너디자인(PC용) 배너디자인(모바일용) 등	

- (활용 제작물) 디자인 개선·제작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활용 제작물 1종 지원

유형	제작물 범위	비고
패키지	아웃박스를 제외한 패키지 디자인 4종 중 선택	1종
브랜드	쇼핑백 또는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 중 선택	1종

* 제작물 지원규모 : 5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제작범위 외 제작물 변경 불가

- (A/S 지원)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/S 지원

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SNS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	35~ 31	30~ 26	25~ 21	20~ 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디자인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 27	26~ 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기술 현황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② 상세페이지 제작

세부사업명 : 상세페이지 제작

사업목적 : 소상공인 대상 상품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
지원규모 : 1,750개사

지원대상 :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(B2C) 상품

* 과거에 상세페이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
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178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사업비		부가가치세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
1,780,000	1,602,000	178,000	178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지원내용

◦ (진단 및 컨설팅)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,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,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

- 대면 또는 비대면 진단·컨설팅 1회 이상 실시

◦ (상세페이지 제작) 상품명, 용도, 특징점, 사용방법, 제품크기, 판매가, 특허, 지식재산권, 기술력 및 원산지 등의 상세페이지 내용 구성

- 타 상세페이지 제작물과의 독창성 및 차별화 등 표현

- 인트로, 상품 포인트, 공통설명, 상세설명, 세부스펙, 필수 정보제공 고시 등 포함 구성

- 사진촬영(썸네일, 누끼컷, 연출컷 등) 15컷 이상, GIF(1개이상) 지원

* 단, 모델컷(초상권 자료 제작 지원 제외)

◦ (A/S 지원) 디자인 결과물 제공 후에도 원본 파일 제공 등 최대 3개월간 A/S 지원*하여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

*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- (AI 활용) 소상공인이 직접 AI 활용 사진 및 상세페이지 제작·편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 -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사진 이미지 변경 및 상세페이지 제작·편집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및 온·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운영
 - 생성형 AI 이용권은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개월수 차등 제공 (이용권 한도 18만원)
- * 수행기관별 AI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수행기관 선택 요망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및 홍보·마케팅 활용 적합성	35~ 31	30~ 26	25~ 21	20~ 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디자인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 27	26~ 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정보(상세설명, 상품특징 등)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③ 콘텐츠 제작

□ 세부사업명 : 콘텐츠 제작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 상품에 적합한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·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
□ 지원규모 : 총 1,260개사

□ 지원대상 :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

* 과거에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61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부가가치세
2,610,000	2,349,000	261,000	261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지원내용

- (소구조사) 다양한 영상 샘플을 제시하고, 참여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영상 콘셉트, 문구 등을 파악하여 영상 기획안 제작
- (콘텐츠 제작)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
 - 참여 소상공인과 협의한 기획안을 기반으로 촬영하며, 기획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요청 가능
- (패키지 제공) 홍보영상 촬영본을 기반으로 이미지컷, GIF, 클린본, 매체별 최적화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콘텐츠 패키지 제공
- (A/S 지원) 최종 영상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간 A/S 지원

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- (실습 프로그램) 동영상 생성형 AI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콘텐츠 제작 실습 프로그램 운영
 - 오프라인 진행, 실습 프로그램 운영 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녹화본 등 공유 예정
 - (AI 구독권) 동영상 생성 AI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
 -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상품 홍보영상 제작·편집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및 온·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운영
- * 수행기관에 따라 지원 AI 프로그램 유형, 제공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행기관별 지원 내용을 확인 후 선택 요망(이용권 한도 26.1만원 상당)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SNS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	35~ 31	30~ 26	25~ 21	20~ 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 27	26~ 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설명 작성 충실 등 참여 의지 및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④-1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온라인쇼핑몰)

- 세부사업명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온라인쇼핑몰)
- 사업목적 : 온라인쇼핑몰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정착 및 매출 활성화 지원
- 지원규모 : 총 4,05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- 지원내용
 - (단독딜 지원) 소상공인-온라인쇼핑몰 간 1대1 매칭 후, 쇼핑몰 내 단독딜 구좌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 지원
 - * 지원사업 신청시 희망 플랫폼(1~3지망) 제출하며, 입점된 플랫폼으로 매칭 및 단독딜 운영
 - (소상공인 전용기획전 운영) 온라인쇼핑몰 내 소상공인 제품만을 노출시키는 기획전을 개설·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 노출 확대
 - (특화지원) 플랫폼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안착 및 매출 확대를 위한 특화지원 운영
 - * 온·오프라인 교육,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수행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중복지원 제한
 - 유사지원 내용 중복수혜 제한을 위해 '26년 온라인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선정기업 확정 이후 해당 소상공인 지원 중단
 - * 단, TOPS에 참여 중인 플랫폼이 상이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지속 지원
 - 동일 사업 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온라인쇼핑몰 ↔ 로컬상품관'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능

<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지원 예시 >



□ 평가 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시장 경쟁력 (25점)	시장현황에 따른 제품경쟁력	13	11	9	7	5
	마케팅 역량	12	10	8	6	4
상품 경쟁력 (25점)	보유기술의 차별성	13	11	9	7	5
	디자인 경쟁력	12	10	8	6	4
상품 구성 (25점)	제품사용에 실용적 구성여부	25	21	17	13	9
가격 적정성 (25점)	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상품경쟁력 > 시장경쟁력 > 상품구성 > 가격적정성)

④-2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로컬상품관 입점 지원)

- 세부사업명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로컬상품관 입점 지원)
 - 사업목적 :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지역몰 입점 및 상품 판매, 마케팅 지원
 - 지원규모 : 총 450개사
 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 - 지원내용
 - (로컬상품관 운영) 지역몰 內 로컬상품관 개설 및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지원
 - (구매상담회) 지자체몰· 민간 플랫폼 MD와 지역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및 지원
- * '온라인쇼핑몰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능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원산지 일치 지자체몰만 신청지원 가능'

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지역 연관성 (25점)	지역 內 주요 사업장 운영여부	13	11	9	7	5
	지역 대표 상품 가능성	12	10	8	6	4
상품 차별성 (25점)	상품의 독창성	13	11	9	7	5
	상품의 품질	12	10	8	6	4
상품 시장성 (25점)	상품의 시장지배 가능성	25	21	17	13	9
발전 가능성 (25점)	지원사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지역연관성 > 상품차별성 > 상품시장성 > 발전가능성)
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

- 세부사업명 :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
- 사업목적 :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총 1,17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389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보조금(90%)		부가가치세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
3,890,000	3,501,000	389,000	389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- 지원내용 :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 - (방송 기획)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(쇼호스트 섭외 등)
 - (방송 송출)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(방송제작, 촬영 등)
 - (연계 지원) 라이브 방송(상품) 기획전, 숏폼 등 연계 지원
- 참여 플랫폼사 : 선정 중 (4월 중 별도 공지 예정)
 - 참여를 희망하는 플랫폼을 우선순위(1~2순위) 순으로 선택하여 신청
 - * 신청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, 플랫폼 변경요청 문자 등 별도 안내 예정
 - * 플랫폼사별 프로그램은 플랫폼 특화 구성으로 상이함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25점)	라이브커머스 사업 목적의 부합성, 제품의 적합성 등	25	21	17	13	9
제품 경쟁력 (25점)	상품의 인지도, 품질의 우수함 등	25	21	17	13	9
가격 적정성 (25점)	제품의 주요 소구점 및 잠재력, 라이브커머스 시장 가격 대비 등	25	21	17	13	9
온라인 역량 (25점)	바이럴 역량, 온라인 마케팅 경험 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사업적합성 > 제품경쟁력 > 가격적정성 > 온라인역량)

※ 기타 유의사항

-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 변경 불가

- * 플랫폼 또는 상품 변경을 원하는 경우, 사업 포기 후 재신청 필요
- * 선정 상품과 동일한 카테고리 상품의 경우, 제한적으로 함께 방송 가능

[예시]	※ (판매가능) 대표상품 : 제육볶음 밀키트, 옵션상품 : 육개장 밀키트 ※ (판매불가) 대표상품 : 제육볶음 밀키트, 옵션상품 : 사과, 딸기 ※ (판매불가) 대표상품 : 제육볶음 밀키트, 옵션상품 : 테이블 세트
------	--

⑥ SNS 마케팅

□ 세부사업명 : SNS 마케팅

□ 사업목적 : SNS 타겟 광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소셜 플랫폼 판로 확장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

□ 지원규모 : 총 1,050개사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7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사업비		부가가치세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
2,750,000	2,475,000	275,000	275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지원내용

○ (진단·컨설팅) 업종 및 판매 제품을 기반으로 타겟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1:1 컨설팅 지원

* SNS 광고 채널은 메타(META)의 보유 SNS서비스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를 통해 진행

○ (타겟광고 지원) SNS 채널에서 소상공인 계정*으로 영상 또는 이미지 소재에 대해 타겟 광고 지원

* 지원사업 관련 전용 광고계정 및 지원광고비 한도(160만원 내외)로 광고대행 지원

* 소상공인이 보유한 SNS 계정으로 위탁 광고 진행을 위해 계정권한 제공 동의 필요

- (광고소재) 광고 소재(영상, 이미지 등)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

○ (분석보고서) 타겟 광고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분석 보고서 제공

* 제공되는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(사후 코칭) 참여업체 대상 AI 구독권(50,000원 이내) 제공 및 마케팅 코칭 교육(1일) 제공

* AI 활용 마케팅 코칭, 프롬프팅 노하우 등 코칭 제공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35점)	사업 지원 동기 및 참여 의지, 콘텐츠 보유 수준 등 사업 적합성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 (30점)	타사 대비 차별화 소구점, 시장성, 흥미 유발 요소 등 경쟁력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판매 최적화 역량 (20점)	판매 사이트 구축 완성도, 상세페이지 최적화 등 역량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마케팅 지원을 통한 SNS광고 운영 및 매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⑦ 온라인 홍보

- 세부사업명 : 온라인 홍보
- 사업목적 : 소상공인 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
- 지원규모 : 총 1,05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7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2,750,000	2,475,000	275,000
		275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지원내용

- (기초 컨설팅) 업종 및 보유제품을 기반으로 타겟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대일 컨설팅 지원
- (광고 지원) 네이버, 카카오 등 포탈 광고(검색·배너·플레이스)지원
 - * 지원사업 관련 전용 광고계정 및 지원광고비 한도(160만원 내외)로 광고대행 지원
 - 검색 광고 : 키워드 검색 시, 상단 노출되는 광고 (파워링크 광고 등)
 - 배너 광고 : 모바일 앱 및 메신저(카카오톡 등)에서 타겟 고객층에게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
 - 플레이스 광고 : 플레이스, 카카오맵 등 상단 노출 광고

<지원광고 유형>

구분	검색 광고	배너 광고	플레이스 광고
적용 예시			
노출 방식	상품군 키워드 검색 시 노출	관심 타겟층에 배너 노출	지역+업종 검색 시 노출

- (코칭 지원) 온·오프라인 홍보 코칭(1일) 제공을 통해 홍보역량 향상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지원
 - (성과 분석) 광고지원 과정 중 대쉬보드(현황판) 제공 및 광고집행 완료 후 개별 소상공인 대상 광고 보고서 제공
 - 광고집행 후, 대쉬보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
- * 제공되는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동의 필요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35점)	온라인 內 판매상품 및 매장등록 여부 퍼포먼스 마케팅 지원 적합성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경쟁력 (30점)	보유상품 및 매장의 온라인 홍보 경쟁력 (시장성, 차별성, 가격 적정성 등)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사업참여 역량 (20점)	온라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계획 및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※ 기타 유의사항

- (광고계정 운영)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은 매체(네이버, 카카오 등) 內 ① 지원사업 전용 광고 계정* 신규 개설 필수, ② 광고대행을 위해 수행기관에게 권한 부여 필수, ③ 광고비의 정산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사항 동의 등 필수

* 지원사업 전용 광고계정 신규개설 및 위탁광고 진행을 위해 계정권한 제공 동의 필요

⑧ 물류 서비스

- 세부사업명 : 물류 서비스
- 사업목적 : 소상공인 물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
- 지원규모 : 총 15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20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2,200,000	1,980,000	220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- 지원내용
 - (물류지원) 상품 보관, 포장, 배송 등 물류 관련 서비스 제공

<참고 예시 : 물류 서비스 지원 영역>

영역 (예시)	내용	비고
입·출고	· 풀필먼트 상품 입고 및 출고	
재고관리	· 풀필먼트 상품 보관 및 재고 관리	
방문수집	·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 상품 수거 및 물류 거점 집하	
부 자 재	· 택배박스, 친환경 포장재, 테이프 등 소모품 지원	
상품포장	· 주문 접수 상품 포장 및 출고	
상품배송	· 주문 상품배송(일반·새벽배송 등)	
배송 CS	· 배송, 오배송, 반품·교환 등 관련 고객 문의 응대	
상품판촉	· 연계 플랫폼·인프라 활용, 판매 홍보	

* 위 표는 단순 물류 지원 영역 예시이며, 수행기관별 제공 가능한 영역은 상이함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35점)	물류 시스템 적합성 (크기, 무게, 보관 등)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경쟁력 (30점)	상품 대중성(물동량 등), 가격, 디자인 등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20점)	상품 기술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온라인 판매 경험 및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※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 후, 입고일로부터 90일간 물류서비스 지원

* 단, 선정 후 지원 2개월(D+60일) 시점, 물류비 70% 이상 소진 시 지원 기간 연장 가능

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

□ 세부사업명 : 유통플랫폼 MD 상담회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과 유통사 MD 간 만남의 장 마련하여, 참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및 대형 유통사 납품 기회 확대 지원

□ 지원규모 : 총 2,000개사

- (지역 우선지원)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, 타 지역 소상공인 중 희망 소상공인에 한하여 상담 추가 지원

<'26년 지역별 MD 상담회 추진 계획(안)>

구 분	지 역	개최지·추진일정	지원목표	개최횟수	
1	경기	경기아트센터(4/30), 킨텍스(10/29~30)	400개사	2회	
2	광주·전남	김대중컨벤션센터(5/21~22), 소담스퀘어(6/10)	200개사	2회	
3	서울	공덕창업허브(5/27, 6/24), DDP(11/17)	400개사	3회	
4	충북	오스코(6/16)	100개사	1회	
5	제주도	한라컨벤션센터(7/3)	50개사	1회	
6	부산	벡스코(7/10)	150개사	1회	
7	인천	송도컨벤시아(7/23~24)	100개사	1회	
8	강원도	소담스퀘어(8/6)	100개사	1회	
9	대구	엑스코(8/21)	100개사	1회	
10	충남	충남북부상공회의소(9/3)	100개사	1회	
11	전북	전북테크비즈센터(10/15)	100개사	1회	
12	경북	안동 스탠포드호텔(11/6)	100개사	1회	
13	동행축제	'대한민국 동행축제' 개최지역	4·11월	100개사	2회

* 지역별 운영규모 및 세부일정 변동가능

** '대한민국 동행축제' 상담의 경우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 참가업체 대상 진행

*** 선정업체 중 각 지역별 오프라인 상담 미참여 업체 대상 별도 온라인(zoom) 상담 지원 예정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
□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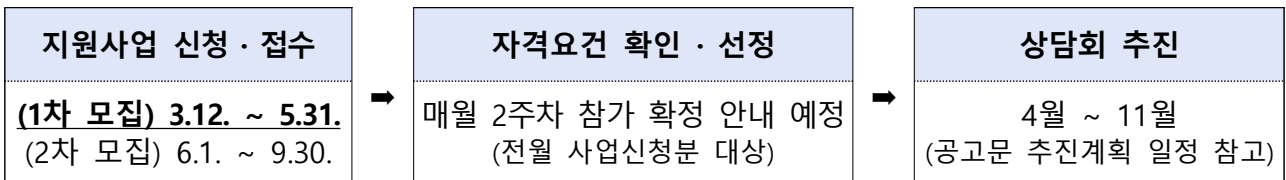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원 내용
MD 상담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:1 상담 지원 * 우수상품 취급 소상공인 대상 별도 품평 상담 추가 진행 예정
전문가 강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판로 확대 역량 강화,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
제품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

* 개최지 규모 및 행사 세부일정 등에 따라 운영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, 추후 참가 확정 소상공인 대상 운영사무국 통해 세부일정(프로그램) 안내 예정

** (참고) '25년 상담회 참가 유통 플랫폼

: GS리테일(홈쇼핑), KT알파쇼핑, NS홈쇼핑, SK스토아, SSG, 도매꾹, 롯데온, 롯데마트(맥스), 세븐일레븐,마켓컬리, 무신사, 쇼핑엔티, 오아시스, 우체국쇼핑몰, 인더마켓, 제철장터, 지마켓, 카카오, 김스클럽, 티딜, 하나로마트, 현대홈쇼핑

□ 추진일정


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** 개최지·회차별 모집 공고일정 본 공고문 3페이지 「사업 신청 및 접수」 참고

□ 신청·접수 기간 : (1차) '26.3.12~5.31. (2차) '26.6.1 ~ 9.30.

- (1차 모집) '26년 4월~7월 개최 예정지 상담회 참가 희망 소상공인 업체 대상 1차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상담 지원 예정

* 대상지역 : 경기(4월), 광주전남(5~6월), 서울(5~6월), 충북(6월), 제주(7월), 부산(7월), 인천(7월)

** 상담회장 운영 규모,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조기마감 및 변동 가능

*** '26년 8월~11월 개최 상담회 참가 희망 소상공인의 경우 2차 모집 기간(6~9월) 내 별도 신청 접수 및 선정 안내 예정

- (2차 모집) 추가 별도 공지 예정

□ 선정(참가 확정) 절차

- (자격요건 확인)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
 -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
 - * 사업 공고문 3페이지 「사업 신청 및 접수」 내 '제출서류' 참고
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
 - * 사업 공고문 2페이지 「신청자격 및 요건」 내 '지원대상' 참고
- (선정안내)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업체 선정하여 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일정 안내 예정
 - *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기준으로 개최되는 상담 일정에 맞춰 안내 진행 예정

□ 유의사항

-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 등)
-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⑩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

- 세부사업명 :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
- 사업목적 :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채널 진출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구축 및 매출 확대 지원
- 지원규모 :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
 - *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지원 가능
- 참여기업 부담금 : (TV) 3,400,000원 / (데이터) 2,725,000원

(단위: 개사, 원)

구분		지원 기업수	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		부가가치세
			정부보조금(80%)	자부담금 (20%)		
방송 지원	TV	120	17,000,000	13,600,000	3,400,000	1,700,000
	데이터	160	13,625,000	10,900,000	2,725,000	1,362,5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** 입점상담회 참여(120개사)는 소상공인 자부담금 없음

- 지원내용 : 홈쇼핑 채널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컨설팅 지원
 - * 홈쇼핑사는 선정 중으로, 4월 20일 판판대로 본 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 - ** 방송지원과 입점상담회는 중복 신청·선정 가능
- (방송지원)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
 - 방송 2회(본방송 1회+ 재방송1회) 송출·판매 지원
 - 지원사업을 통한 방송 시,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(최대 15%)
 - * 판매수수료는 홈쇼핑사별로 상이하며, 홈쇼핑사 선정 이후 4월 20일 판판대로 본 사업 신청페이지에 별도 기재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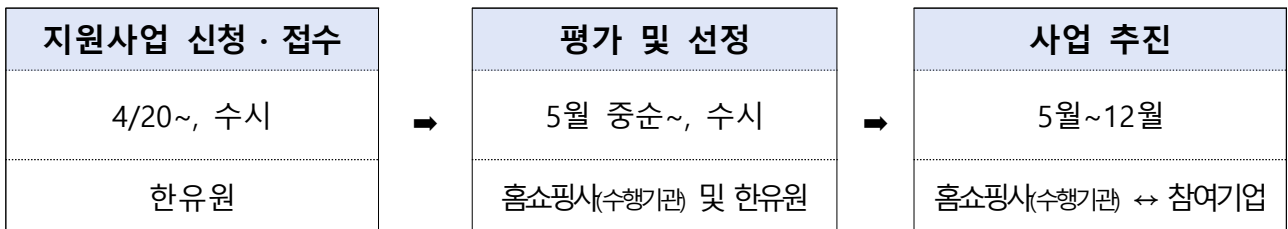
- (입점상담회)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(상품성, QA, 입점절차 등)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
 -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:1 매칭으로 상품의 시장성, 입점전략 등 컨설팅
 -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 지원

□ 평가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상품성 (25점)	상품 품질의 우수성, 실용성	25	21	17	13	9
시연성 (25점)	방송 중 표현, 시연의 적합성	25	21	17	13	9
가격적정성 (25점)	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	25	21	17	13	9
상품구성 (25점)	상품구성의 홈쇼핑 방송 적합도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
(우선순위 : 상품성 > 시연성 > 가격적정성 > 상품구성)

□ 추진일정


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<붙임2>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증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